

인천광역시 공고 제2008 - 1332호

『인천문화산업진흥지구』 지정 공고

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8조의2(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)의
규정에 의거 『인천문화산업진흥지구』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08년 12월 일

인 천 광 역 시 장 인

1. 명 칭 : 인천문화산업진흥지구
2. 위 치 : 인천. 남. 도화동 592-5번지 일대(도화동, 주안동 일원)
3. 면 적 : 263,164㎡(약 8만평)
4. 중점 육성분야 : 차세대 실감형 콘텐츠 산업
5. 조성계획 개요
 - 가. 기 간 : 2008년 12. 3 ~ 해제시 까지
 - 중점육성기간 : 2008. ~ 2013.(지구지정 해제 시는 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해제)
 - 나. 시 행 자 : 인천광역시, (재)인천정보산업진흥원
 - 다. 조성방법 : 기존 구축되어 있는 시설 및 산업을 기반으로 기업·대학·연구소 등을 집적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을 지역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

라. 지구 주요시설 및 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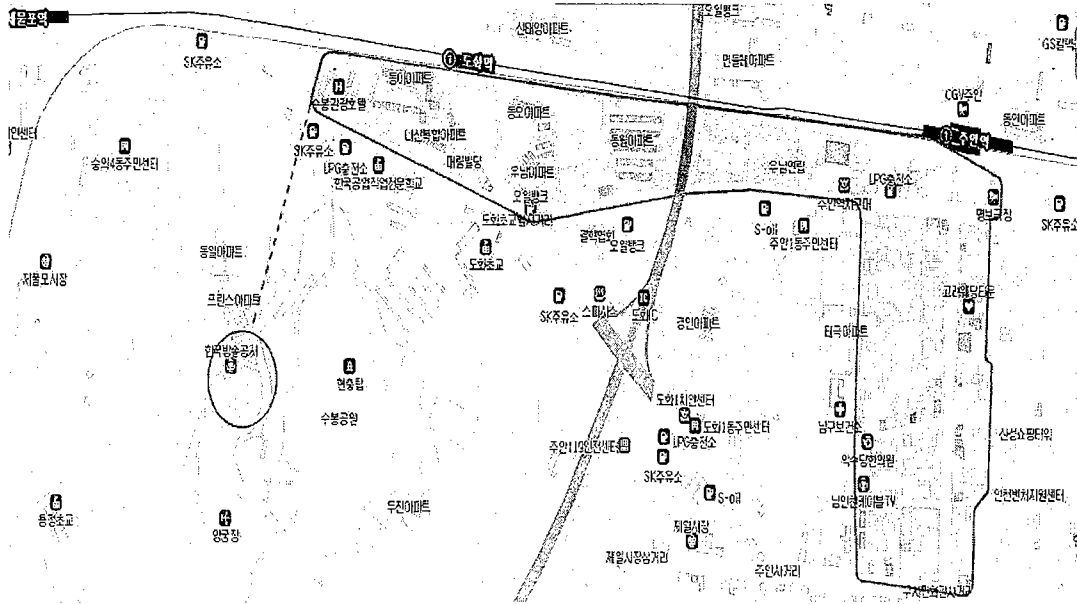
- 창업보육사업
- 기업·대학·연구소·지원기관 유치 및 집적화 사업
- 콘텐츠 상품화 및 연구개발(R&D) 사업
-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사업
- 기업지원사업
- 산·학·연 협력사업
- 네트워크 구축사업

붙임 : 1. 위치도 및 관련지번 1부

2. 지원혜택, 관련법규, 참고자료 각 1부

(붙임 1)

위치도



관 련 지 번

◆도화동	558-40대	562-6대	572-22대	575-9대	580-1대
557-10대	558-43대	562-7대	572-23대	578-11대	580-2대
557-16대	558-44대	562-8대	572-2대	578-17대	580-3대
557-19대	558-45대	563-1대	572-3대	578-1대	581-12대
557-1대	558-46대	563-2대	572-5대	578-20대	581-13대
557-20대	558-47대	563-4대	572-8대	578-2대	581-14대
557-21대	558-48대	563-5대	572-9대	578-31대	581-15대
557-22대	558-4대	563-6대	573-1대	578-32대	581-16대
557-23대	558-54대	563-7대	573-2대	578-33대	581-17대
557-24대	558-5대	563-8대	573-3대	578-4대	581-18대
557-25대	558-6대	566-2대	573-5대	578-5대	581-19대
557-26대	558-7대	567-10대	573-7대	578-6대	581-22대
557-27대	558-8대	567-11대	574-1대	578-7대	581-23대
557-2대	558-9대	567-12대	574-2대	578-8대	581-24대
557-7대	559-2대	567-13대	574-3대	579-10대	581-25대
557-9대	559-3대	567-14대	574-4대	579-11대	581-26대
558-10대	559-4대	567-15대	574-5대	579-12대	581-28대
558-11대	560-10대	567-16대	574-6대	579-13대	581-2대
558-12대	560-11대	567-18대	574-7대	579-14대	581-3대
558-13대	560-12대	567-19대	574-8대	579-15대	581-4대
558-14대	560-13대	567-1대	575-10대	579-16대	581-5대
558-15대	560-15대	567-20대	575-12대	579-17대	581-6대
558-16대	560-16대	567-21대	575-13대	579-18대	581-7대
558-17대	560-17대	567-3대	575-14대	579-19대	581-8대
558-18대	560-19대	567-4대	575-15대	579-20대	581-9대
558-1대	560-1대	567-5대	575-16대	579-21대	582-10대
558-20대	560-20대	567-6대	575-17대	579-22대	582-11대
558-21대	560-21대	567-7대	575-18대	579-23대	582-12대
558-22대	560-22대	571-11대	575-19대	579-24대	582-14대
558-23대	560-23대	571-12대	575-1대	579-28대	582-16대
558-24대	560-24대	571-1대	575-20대	579-29대	582-17대
558-26대	560-26 대	571-2대	575-21대	579-31대	582-18 대
558-27대	560-2대	571-3대	575-22대	579-32대	582-19 대
558-28대	560-3대	571-4대	575-23대	579-34대	582-20 대
558-29대	560-4대	571-5대	575-24대	579-35대	582-21대
558-2대	560-5대	571-6대	575-25대	579-36대	582-22대
558-30대	560-8대	572-10대	575-26대	579-37대	582-23대
558-31대	560-9대	572-12대	575-27대	579-39대	582-24대
558-32대	561-10대	572-13대	575-28대	579-3대	582-25대
558-33대	561-11대	572-16대	575-2대	579-40대	582-26대
558-34대	561-5대	572-17대	575-3대	579-41대	582-27 대
558-35대	561-8대	572-18대	575-4대	579-4대	582-28대
558-36대	562-1대	572-19대	575-5대	579-5대	582-29대
558-37대	562-2대	572-1대	575-6대	579-7대	582-30대
558-38대	562-3대	572-20대	575-7대	579-8대	582-31대
	562-4대	572-21대	575-8대	579-9대	582-32대

582-33대	585-3대	589-2대	601-2대	604-12대	615-2대
582-34대	586-1대	589-5대	603-10대	604-14대	615-4대
582-35 대	586-2대	589-6대	603-11대	604-15대	615-5대
582-36 대	586-3대	589-7대	603-12대	604-16대	615-7대
582-37 대	586-4대	590-1대	603-13대	604-17대	615-8대
582-38 대	586-5대	590-2대	603-15대	604-18대	615-9대
582-39 대	586-6대	591-1대	603-16대	604-19대	618-1대
582-3대	587-1대	591-2대	603-18대	604-1대	618-2대
582-40 대	587-2대	592-10대	603-1대	604-20대	618-3대
582-41 대	587-3대	592-1대	603-20대	604-22대	618-4대
582-4대	587-4대	592-2대	603-21대	604-2대	618-7대
582-5 대	587-5대	592-3대	603-22대	604-3대	618-8대
582-6대	587-6대	592-4대	603-23대	604-4대	618-9대
582-7 대	587-7대	592-5대	603-2대	604-5대	619-1대
582-8 대	587-8대	594-1대	603-4대	604-7대	619-2대
582-9대	587-9대	594-2대	603-5대	604-8대	619-3대
584-3대	588-2대	594-3대	603-6대	604-9대	619-5대
584-5대	588-7대	594-4대	603-7대	605-1대	619-6대
584-6대	589-10대	594-5대	603-9대	606-7대	619-7대
584-7대	589-15대	594-6대	604-10대	615-10대	619-8대
585-2대	589-1대	601-1대	604-11대	615-1대	658-11대

◆주안동	165-1대	186-8대	203-3대	210-5대	215-7대
130-10대	165-2대	186-9대	203-4대	210-6대	215-8대
130-8대	165-3대	190-1대	203-5대	210-9대	215-9대
140-10대	165-4대	190-2대	203-6대	211-1대	216-10대
140-11대	165-5대	190-3대	203-8대	211-2대	216-12대
140-1대	165-6대	190-4대	203-9대	211-3대	216-13대
140-2대	165-7대	190-5대	204-2대	211-4대	216-14대
140-3대	165-8대	190-7대	205-11대	211-5대	216-15대
140-4대	166-1대	190-8대	205-12대	211-6대	216-1대
140-5대	172-1대	191-1대	205-13대	211-7대	216-2대
140-7대	172-2대	191-2대	205-14대	211-8대	216-3대
140-8대	172-3대	191-3대	205-1대	211-9대	216-4대
140-9대	173-11대	191-4대	205-2대	212-11대	216-5대
141-10대	173-12대	192-2대	205-3대	212-12대	216-6대
141-1대	173-14대	192-4대	205-5대	212-1대	216-7대
141-4대	173-15대	192-6대	205-6대	212-2대	216-8대
141-5대	173-16대	192-7대	206-10대	212-3대	216-9대
141-6대	173-17대	192-8대	206-13대	212-4대	219-10대
141-7대	173-18대	193-1대	206-14대	212-6대	219-11대
141-8대	173-1대	193-5대	206-15대	212-7대	219-12대
141-9대	173-2대	193-7대	206-16대	212-8대	219-13대
142-1대	173-4대	194-15대	206-17대	213-1대	219-14대
142-2대	173-5대	194-4대	206-18대	213-3대	219-15대
142-3대	173-6대	194-5대	206-1대	213-9대	219-16대
142-4대	173-7대	194-6대	206-21대	214-10대	219-17대
143-12대	173-8대	194-7대	206-22대	214-11대	219-18대
143-13대	173-9대	194-8대	206-23대	214-12대	219-19대
143-14대	174-3대	195-1대	206-24대	214-13대	219-1대
143-1대	174-4대	195-2대	206-25대	214-14대	219-20대
143-3대	174-5대	195-3대	206-26대	214-15대	219-21대
143-4대	175-1대	196-11대	206-27대	214-16대	219-23대
143-6대	175-3대	196-16대	206-28대	214-17대	219-25대
143-7대	175-5대	196-17대	206-29대	214-18대	219-26대
143-8대	185-1대	196-19대	206-2대	214-1대	219-2대
144-2대	185-2대	196-1대	206-32대	214-2대	219-3대
144-3대	185-3대	196-21대	206-33대	214-3대	219-4대
144-4대	185-4대	202-1대	206-4대	214-4대	219-5대
161-10대	185-5대	203-10대	206-5대	214-5대	219-6대
161-11대	185-6대	203-12대	206-8대	214-6대	219-7대
161-1대	185-7대	203-14대	206-9대	214-7대	219-8대
161-2대	186-10대	203-15대	210-11대	214-8대	219-9대
161-3대	186-11대	203-17대	210-12대	214-9대	220-11대
161-4대	186-12대	203-18대	210-13대	215-1대	220-12대
161-5대	186-14대	203-19대	210-1대	215-2대	220-13대
161-6대	186-1대	203-1대	210-2대	215-4대	220-14대
161-8대	186-6대	203-21대	210-3대	215-5대	220-16대
161-9대	186-7대	203-2대	210-4대	215-6대	220-17대

220-1대	225-6대	231-11대	260-2대	395-30대	478-45대
220-2대	225-7대	231-1대	261-11대	395-31대	478-46대
220-3대	225-8대	231-2대	261-12대	395-32대	478-47대
220-4대	226-10대	231-8대	261-13대	395-33대	478-48대
220-6대	226-1대	231-9대	261-1대	395-34대	478-49대
220-7대	226-2대	232-2대	261-2대	395-35대	478-50대
220-8대	226-3대	232-3대	261-3대	395-36대	478-51대
220-9대	226-4대	232-5대	261-4대	395-37대	478-53대
221-1대	226-5대	232-6대	261-5대	395-3대	478-54대
221-2대	226-6대	232-7대	261-6대	395-40대	478-55대
221-8대	226-7대	232-8대	261-7대	395-4대	478-59대
221-9대	226-8대	232-9대	261-8대	395-5대	478-61대
222-10대	226-9대	233-10대	261-9대	395-6대	478-7대
222-11대	227-27대	233-11대	261대	395-7대	480-10대
222-12대	227-29대	233-1대	262-1대	395-8대	480-3대
222-13대	227-30대	233-2대	262-2대	395-9대	7-4전(승의동)
222-14대	227-31대	233-5대	262-3대	400-10대	
222-15대	227-32대	233-6대	262-4대	400-11대	
222-16대	227-33대	233-7대	262-5대	400-12대	
222-17대	227-34대	233-8대	262-8대	400-13대	
222-18대	227-35대	233-9대	262-9대	400-14대	
222-19대	227대	237-1대	263-1대	400-15대	
222-1대	228-1대	237-2대	263-3대	400-16대	
222-20대	228-2대	237-3대	295-1대	400-17대	
222-21대	229-10대	237-4대	295대	400-19대	
222-22대	229-11대	237-5대	393대	400-1대	
222-23대	229-12대	237-6대	393-1대	400-20대	
222-24대	229-1대	237-7대	394대	400-2대	
222-25대	229-3대	237-8대	395-10대	400-3대	
222-26대	229-4대	238-1대	395-11대	400-4대	
222-2대	229-5대	238-4대	395-12대	400-5대	
222-3대	229-6대	238-5대	395-13대	400-7대	
222-5대	229-7대	239-2대	395-14대	400-8대	
222-7대	229-8대	241-11대	395-15대	400-9대	
222-8대	230-10대	241-12대	395-16대	478-32대	
222-9대	230-11대	241-1대	395-17대	478-33대	
223-1대	230-12대	241-2대	395-18대	478-34대	
223-3대	230-13대	241-3대	395-19대	478-35대	
223-9대	230-1대	241-4대	395-1대	478-36대	
224-1대	230-2대	241-5대	395-20대	478-37대	
224-2대	230-3대	241-6대	395-21대	478-38대	
224-3대	230-4대	241-7대	395-22대	478-39대	
224-4대	230-6대	241-8대	395-23대	478-40대	
225-1대	230-7대	241-9대	395-24대	478-41대	
225-2대	230-8대	243-1대	395-26대	478-42대	
225-3대	230-9대	243대	395-29대	478-43대	
225-5대	231-10대	260-1대	395-2대	478-44대	

(붙임 2)

지원 예택

문화산업진흥지구 지원 및 예택

□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
각종 부담금 및 인허가 면제

① 각종 부담금의 면제

-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
-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
- 초지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
- 문화산업진흥지구 안의 문화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
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

② 허가 또는 인가의 면제

- 「하수도법」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
-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
-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 등의 허가
-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
-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
-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
-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
- 도시계획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
-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

※ 세제지원 추진(문화체육관광부 법개정 추진 중)

-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이전하는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마련

관련 법규

문화산업진흥 기본법

[일부개정 2008.3.28 법률 제9071호]

제28조의2 (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)

- ① 시·도지사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.
- 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(이하 "지구심의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.
- ④ 시·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⑤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 - 1.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
 - 2. 사업의 지연,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- ⑥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심의 및 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구심의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08.2.29>
-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 및 절차,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지구심의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06.4.28]
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

[일부개정 2008.2.29 대통령령 제20676호]

제33조의2 (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)

-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(이하 "진흥지구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 - 1. 진흥지구의 예정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문화상품의 기획·제작·개발·생산·유통과 관련된 시설이 집적되어 있을 것
 - 2. 진흥지구의 예정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교통·통신·금융 등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
 - 3. 진흥지구의 예정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교육기관·연구시설 등이 있을 것
-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진흥지구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진흥지구의 명칭, 2. 위치 및 면적, 3. 지정의 목적
 - 4. 문화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주요 기반시설 및 환경, 5. 향후 지원·육성계획
- ③ 법 제28조의2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, 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진흥지구의 명칭, 2. 위치 및 면적, 3. 조성계획의 개요(지정의 경우에 한한다)
 - 4. 변경내용의 개요(변경의 경우에 한한다), 5. 해제내용의 개요(해제의 경우에 한한다)

[본조신설 2006.10.26]

참고 자료

문화산업단지·진흥지구·진흥시설 비교

구 분	문화산업단지	문화산업진흥지구	문화산업진흥시설
개 념	기업, 대학, 연구소, 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, 기술훈련, 정보교류, 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·건물·시설의 집합체로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정·개발된 산업단지	문화산업 관련기업 및 대학,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,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·연구개발·인력양성·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	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
혜 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종 부담금의 면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지전용부담금 (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45조의 2) - 산림전용부담금 (산림법 제20조의 2, 3) -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(산지관리법 제19조) - 농지보전부담금(농지법 제40조) - 대체초지조성비 (초지법 제23조 제6항) - 교통유발부담금 면제(도시교통촉진법제 제18조) ○ 개발부담금의 면제 (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5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가 개발할 경우 : 100% - 지자체가 개발할 경우 : 50% ○ 각종 인·허가 혜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종 부담금의 면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(산지관리법 제19조) - 농지보전부담금 (농지법 제40조) - 대체초지조성비 (초지법 제23조 제6항) - 교통유발부담금 면제(도시교통촉진법제 제18조) ○ 각종 인·허가 혜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종 부담금의 면제 (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인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발부담금 - 농지전용부담금 -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- 농지보전부담금 - 대체초지조성비 - 교통유발부담금 (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) ○ 과밀부담금 면제 (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3조) ○ 취득세, 등록세 면제 (지방세법 제276조3항) ○ 재산세 50% 면제(수도권의 지역은 전액 면제) (지방세법제276조3항) ○ "예술장식품 설치의무" 배제
부지면적 및 용도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지면적 1만㎡이상 이어야함 ○ 준주거지역, 상업지역, 개발촉진지역이어야함 (주거지역, 녹지지역, 과밀억제 권역은 불가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한없음, 용도와 관계없이 관할구역안의 일정지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한없음 ○ 시설물내에 문화산업관련 사업자수10이상(서울시20이상) 입주 ○ 문화산업관련사업자의 사업장 및 지원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총면적의 100분의 50이상
비 고 (장단점)	인위적으로 단지에 업체, 연구소, 대학 등을 집적화함으로써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사업완성까지 장기간 소요	인위적인 집합체가 아닌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지원을 통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음 ※국고지원의 근거를 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목적이 있음	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어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들의 자생력 확보